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9월 1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 9. 11.)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선희 식품산업과장)

가. 동의를구하는 사항

○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5. 1. 1. ~ 2026. 12. 31.)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대학 또는 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제안사유

○ 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관, 대학 등에 재위탁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수준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의회 동의)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사무의 내용

-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 어린이·취약계층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식사 지도
-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
- 그 밖에 어린이·취약계층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민간위탁기간 : 3년(2027. 1. 1. ~ 2029. 12. 31.)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마. 추진절차

- ′ 26. 9. 의회 동의안 통과 및 수탁기관 공고
- ′ 26. 10.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심의
- ′ 26. 11. 위·수탁 협약 체결
- ′ 27. 1. 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검토개요

- 심의일시 : 2026. 5. 20.(수) 16:00
- 심의위원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6명(당연직 2, 위촉직 4)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 포항시 I, II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외 11건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심의 및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적정으로 의결
- 근　　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

나. 검토결과

- 총무새마을과-20596(2026. 5. 27.)호 관련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 가결’

항　목	검 토 결 과
1. 다른 사무방식 수행 가능성	・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로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함. ・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민간위탁 시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과 성과관리가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경제적 효율성	・ 전문기관이 보유한 사무공간, 교육장, 조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시설・장비 구축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운영 및 센터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위생·영양·조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로 대학 등 전문기관의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교수진 등 전문인력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급식관리 서비스의 전문성 및 업무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5.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연간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급식소 지원실적, 교육·컨설팅 실적, 만족도 등 정량·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정기적인 현장평가를 통해 센터 운영관리, 급식소 지원실적, 이용자 만족도 및 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가능함.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급식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급식시설의 경우 자체적인 위생·영양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급식관리 서비스 제공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성과평가

가. 평가결과

구 분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요소	유 형	배 점	득 점
공통 지표	사업인프라	조직·인력관리	관리감독체계 적절성	정성	2.00	**1.80**
			사무담당 인력 적정성	정성	2.00	**1.90**
		재정·예산 효율성	예산수립 및 집행 적절성	정성	3.00	**3.00**
	사업계획 및 활동	사업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정성	3.00	**2.85**
			세부사업·실행과제 목표부합성 및 구체성	정성	2.00	**1.90**
			성과목표 타당성 및 구체성	정성	2.00	**1.80**
		리더십 등 사업활성화 개선	기관장 사무개선노력 및 실적	정성	3.00	**2.94**
			자체 성과평가 시행 및 결과활용	정성	2.00	**1.88**
	지도점검 감사 이행 노력	지도점검 결과 이행	지도점검 이행률	정성	4.00	**4.00**
			지도점검 이행노력	정성	4.00	**4.00**
		평가환류	전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이행도	정성	3.00	**2.40**
	소 계				30.00	**28.47**
성과 지표	급식 관리운영 안정성 및 위생·영양 서비스 품질 확보	사업추진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 적정성	정성	22.00	**21.12**
		사업성과의 적정성	등록 및 관리 기반 성과	정량	10.00	**10.00**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성과	정량	20.00	**20.00**
			급식 품질 및 식단지원 성과	정량	8.00	**8.00**
			교육 및 역량강화 성과	정량	5.00	**1.25**
			지역사회 기여 및 홍보 성과	정량	5.00	**5.00**
	소 계				70.00	**65.37**
감점 지표	각종 법규 위반 및 조치 미이행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및 세금체납		정량	(-2.00)	**0.00**
		수탁업무 종사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미지급		정량	(-2.00)	**0.00**
		제3자 위탁금지 및 협약사항 위반		정량	(-2.00)	**0.00**
		위탁사무 목적 외 시설·장비·예산 사용		정량	(-2.00)	**0.00**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 등) 미이수		정량	(-2.00)	**0.0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정량	(-2.00)	**0.00**
	소 계				(-12.00)	**0.00**
총 점					100	**93.84**

나. 종합 평가의견

구 분	평가부문	평가내용
공통 지표	사업인프라	· 센터장-부센터장-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와 분야별 업무분장 및 대체자 지정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운영위원회, 근무성적평가 및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직·인력에 대한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위생사 등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 식단개발 및 교육 등 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사업계획 및 활동	· 사업계획은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급식소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위생·영양 순회지원, 교육, 특화사업 등의 추진내용과 일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다만 만족도·평가점수 중심의 성과목표를 넘어 위생·영양 개선효과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필요함 · 기관장의 대외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위해미생물 컨설팅, 적정배식량 관리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와 만족도·요구도 조사, 자체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과환류체계도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지도점검 감사 이행노력	· 평가기간 중 지도·점검 지적사항 없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이행률 및 이행노력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전기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자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일부 개선실적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해당 분야의 개선조치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관리 및 문서화할 필요 있음

성과 지표	고유목적 사업	・ 사업목적에 따라 영양・위생지원, 교육 및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개선과 전문지역센터 사업의 외부 확산 등 질적 성과도 우수하게 나타남. 특히 적정배식량 관리 등 자체 개발사업을 표준화・모델화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한 점이 우수하나, 향후에는 참여인원과 만족도 중심의 지표에서 나아가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감점 지표	각종 법규 위반 및 조치 미이행	・ 임금체불, 협약사항 위반, 목적 외 예산 사용, 보조금 유용 등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 필수교육 이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역시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점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6. 수탁기관 선정방식

가. 모집방식 : 센터별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관련 추진 실적
- 사업운영의 투명성
-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다. 자격요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의거 위탁기관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대학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학부제 대학인 경우 "식품 및 영양 관련 과목" 전공학부 교과과정 개설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위탁기관 선정 근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장준호)

○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영양 수준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포항시 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하여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지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 지도 등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다음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 보았을때,**

식품 관련 기관 및 대학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소규모 복지시설의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기여 및 안전성 확보 등 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전문성,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무의 연관성 등을 두루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운영 실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9. 토론의 요지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